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 등을 위한 국가사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이외에도 지도업무의 계획 수립·운영 및 지도원 교육·훈련 등 산림경영 지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생략)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u>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u>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⑦ ----- ---- <u>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정책과	
연락처	(042) 481 - 4037